

구직신청서(상용)

※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(*)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.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1쪽)

구직인증번호(접수번호)	접수일	처리기간: 1일
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

개인정보	성명(*)		주민등록번호(*)		
	①주소(*) (우편번호 :) (현거주지)				
	②연락처	전화번호(*) (선택 가능)	자택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	휴대전화 문자서비스 []받음 []받지 않음			
		전자우편	전자우편수신 서비스 []받음 []받지 않음		

최종 학력사항(*)	학교명	전공(부전공)	재학기간	상태	
			년 월 ~ 년 월	[]졸업(예정) []재학 []수료 []휴학 []중퇴 []검정고시	

우선순위	희망직종	희망입사형태(*)	경력	희망직무내용
1		[]신입 []경력	년 개월	
2		[]신입 []경력	년 개월	
3		[]신입 []경력	년 개월	
희망근무지역(*)		1순위 ()시·도 ()구·군 2순위 ()시·도 ()구·군 [] 재택근무 [] 관계없음		
고용형태(*) (복수 선택가능)		[]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[]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[]파견근로 []시간제 ※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원하는 경우		
병역특례취업희망		[]현역병입영대상자 []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[]전문연구요원		
희망임금형태 및 금액(*)		[]연봉	연 ()만원 이상	[]면접 후 결정 가능
		[]월급	월 평균 ()만원 이상 (연간총액 ÷ 12)	
		[]일급	일당 ()원 이상	
		[]시급	시간당 ()원 이상	
그 밖의 희망사항(근무가능 기간·시간, 기숙사·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)				

구직알선희망정도	[]알선 필요 []알선 필요하지 않음
구직정보 제공 동의 여부	[]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[]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[]지방자치단체 제공 동의 []동의하지 않음
개인정보 조회 동의 여부	[]동의 []동의하지 않음 ※ 신청인의 고용보험가입 이력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알선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직업안정기관의 장

귀하

첨부서류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(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구직신청 후 취업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직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즉시 해당 내용을 알려 구직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.
2.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구직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.
3. 제출하신 구직신청서는 워크넷(<http://www.work.go.kr>)에 공개됩니다.

작성방법

1. 아래의 항목은 해당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①주소: 현재 거주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.
 - ②연락처: 상담 담당자 또는 구인자 등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며,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는 본인에 대한 구직 알선 및 취업처리 현황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해당 문자서비스의 수신희망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2. 희망직종란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3개 직종을 적고, 희망입사형태란 중 경력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경력을 정확히 적으며, 희망직무내용은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.
 - ※ 직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담당자와 상담한 이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3. 고용형태 중 “파견근로”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하여 별도의 사용자업주를 위하여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, “시간제”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
4. 병역특례취업희망은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여 병역을 대체하고자 하는 구직자만 표시합니다.
 - ※ 전문연구·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,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입니다.

아래의 난은 상담 담당자가 적습니다.

상담 담당자	
상담사항	

업무처리 절차



